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8 선고 2015나5917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15. 11. 17.

판결 선고 2015. 12. 8.

제 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7. 14. 선고 2014가단11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시 C 대 129㎡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0㎡ 지상 조립식판넬조 아스팔트싱글지붕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726,900원 및 2014. 10. 29.부터 위 토지인도완료일까지 월 50,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내용】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및 대한지적공사 속초시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항의 "2014. 10. 18."을 "2014. 10. 28."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항의 "2014. 10. 19."을 "2014. 10. 2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다."를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17행까지의 "가.",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건물 부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고, 가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이자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이 이 사건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 각 제한물권을 설정하였는바 이로써 차후에 피고가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할 것을 승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 다.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 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대법원 1995. 12. 11.자 95마1262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포수산업협동조합이 2004. 5. 28. 피고 소유였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는 2005. 12. 16.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고, 2007.4.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대포수산업협동조합은 2010. 6.11.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D)을 받았고, 원고는 2013. 2. 21. 위 임의경매개시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포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것으로서,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그러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진암, 판사 방혜미, 판사 노한동

감정도

강원도 속초시 축척 1200 분의 1

범례

—	계곡선
—	감정사항(건물외벽)선
○	지상경계표시점

참고도

면적표시

지번	부호	면적(m ²)
	ㄱ (대지)	89
	ㄴ (건물)	40

